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816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1. 6.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1. 6. 11. 접수 제531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B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¹⁾, 피고는 조카인 B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인 2021.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21. 6. 11.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5, 을1 내지 6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

1)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51,000,000원인 반면, 총채무액은

252,950,043원이다.